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57호
-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역할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 위촉직 위원 임명·위촉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간사 역할 조항 수정(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5. 29. ~ 2024. 6. 5.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및 임명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규정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1)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 위촉직 위원 임명·위촉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간사 역할 조항 수정(안 제1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 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신설 구성함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위원회의 위촉직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촉직 임명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18.>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3. 8. 8.>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1. 5. 25.]>
-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청소년·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20.〔본조신설 2008. 1. 17.〕>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17.]